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3. 26 선고 2020나13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3. 26 선고 2020나1316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합627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 선고 2021. 3. 2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합627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E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8. 체결된 매매약정(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을, 제2, 3, 4,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 체결된 양도약정(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을, 제5, 6, 33, 34, 35, 36, 37,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 체결된 양도약정(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을, 제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9, 40, 41, 42, 43, 44, 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2. 체결된 매매약정(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을, 제46, 47,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7. 체결된 매매약정(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216605호2) 로 마친,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216612호로 마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12호로 마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23호로 마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34호로 마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43호로 마친,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52호로 마친,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59호로 마친, 제8 내지 15, 17 내지 32, 39 내지 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24호로 마친, 제33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25호로 마친, 제46, 47,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2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216606호로 마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13호로 마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24호로 마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35호로 마친,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44호로 마친,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53호로 마친,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223460호로 마친,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35호로 마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36호로 마친,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37호로 마친,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38호로 마친,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39호로 마친,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0호로 마친,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1호로 마친,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2호로 마친,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216614호로 마친,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3호로 마친,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4호로 마친,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5호로 마친,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6호로 마친,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7호로 마친, 제2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8호로 마친,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49호로 마친, 제2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0호로 마친,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1호로 마친,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0852호로 마친,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3호로 마친,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4호로
 마친, 제2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5호로 마친, 제3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6호로 마친, 제3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7호로 마친, 제3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8호로 마친, 제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59호로 마친, 제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0호로 마친,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1호로 마친, 제3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0862로 마친, 제3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3호로 마친, 제3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4호로 마친,
 제3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5호로
 마친, 제4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6호로 마친, 제4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7호로 마친, 제4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8호로 마친, 제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69호로 마친, 제4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70호로 마친, 제4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71호로 마친, 제4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0872로 마친, 제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73호로 마친,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108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45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0. 6. 접수 제146075호로 마친, 제46, 47, 4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0. 13. 접수 제148475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나, 다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면 14행, 11면 4행의 "청구취지 제1의 가항"을 "청구취지 가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6행, 7행의 "청구취지 제1의 나항"을 "청구취지 나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청구취지 제1의 다항"을 "청구취지 다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10행의 "피고 B 유한회사"를 "B 유한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 같은 면 11, 12행의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이후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취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의 "33호증"을 "33, 34, 36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E이 피고 D과 J건물 각 호실(M호 내지 Q호 제외)에 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은 2013. 3.

30.경부터 2015. 1. 7.경까지이다. 위 각 매매약정은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매매약정이 체결된 2013. 3. 30.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늦어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R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854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2016. 10. 19.경에는 E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도과 여부

E과 피고 D 사이의 J건물 각 호실에 관한 매매약정 등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두 회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등 사해성을 판단함에 있어 각 매매약정 등을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성을 판단할 때 각 매매약정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각 매매약정 등의 대상이 된 J건물 호실 전부가 처분됨으로써 E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14. 3. 29. 선고 2012다34740 판결 취지 참조), 이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처분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일괄적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가 E과 피고 D 사이의 각 매매약정 등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에 이루어진 매매약정 등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 등기부가 개설된 후인 2015. 7. 29.경 당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K로부터 Z호 내지 AB호, AC호 내지 A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 후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K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앞서 등기된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R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854)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6. 10. 19. 그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사실, 위 소장 부분 송달 당시 이 사건 호실의 각 등기부에는 위와 같이 말소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다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D의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말소되어 있었던 사실,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854)는 E과 피고 D 사이의 J건물 각 호실에 대한 매매약정과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J건물 각 호실에 대한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854 사건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6. 10. 19. 무렵 E이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 D과 사이에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양도약정 또는 매매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1. 21.로부터 1년 전에

E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F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던 E, 피고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구 등기부를 폐쇄하고 E 앞으로 신 등기부를 개설한 후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E,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20. 9. 10.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F이 E를 2009. 5.경 AE으로부터 인수하여 E의 소유자가 된 사실, ② F이 2009. 5.경 E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E이 L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③ F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구 등기부를 폐쇄한 사실, ④ 피고 D도 실제로는 F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 ⑤ E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매매예약 및 조정조서가 실제로 F이 꾸민 가장행위라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피보전권리의 성립 자체를 알 수 있고, 그 후에야 비로소 피보전채권을 침해하기 위한 E의 사해의사를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적어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854 사건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구 등기부가 폐쇄되고 신 등기부가 개설되어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장을 통해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인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 E, 피고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구 등기부등본을 폐쇄하고, E 앞으로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한 후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F 명의의 이 사건 각 호실을 피고 D 명의로 바꾸었다. 이는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E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양도약정, 매매약정의 취소 및 피고 D,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이 E, 피고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구 등기부를 폐쇄하고 E 앞으로 신 등기부를 개설한 후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E, 피고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E과 피고 D 사이의 각 매매약정 및 양도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이는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이다. 사해행위로 인해 비로소 성립하는 채권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게다가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 확정판결을 따라 모든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구 등기부상 최종 소유명의자가 F이었던 것은 AA호4), AF호5)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호실의 경우에는 위 구 등기부상의 최종소유자가 F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F 및 피고 D와 공모하여 원고의 F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구 등기부를 폐쇄하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종훈

판사서여정

별지

- 1) 원고는 제1심에서 B 유한회사를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D과 B 유한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20. 12. 30. B 유한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등기부상 접수번호와 다름이 명백하여 오기로 보아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 3) 원고는 이 법원에서 라항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 4) 갑 제34호증의 8
- 5) 갑 제34호증의 32